

# 심 사 보 고 서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2. 3.10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2. 3.16.

4. 상정일자 :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4. 5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2. 4.11.)

- 원안 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- 의안번호 제3155호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
- 본 안건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의 37.8% 규모인 275억 원을 변경하는 것으로
-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'비용자성 사업비'를 1,109억 1백만 원에서 1,384억 1백만 원으로 275억 원 증액하였으며, 재무활동은 '예치금'을 700억 8천 7백만 원에서 425억 8천 7백만 원으로 275억 원 감액하였음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정희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155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# 1)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# 2) 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이 지속 증가하였고, '22년 4무 안심금융 1조원 공급에 따른 무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출액 27,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함.

- 나.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 136,276백만원 반영에 따라, 예치금이 42,587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정책사업(재무활동) 지출계획은 당초 대비 37.8% 변경되었음.

- 이차보전금 : 108,776백만원 → 136,276백만원 (증 27,500백만원)
- 예치금 : 70,087백만원 → 42,587백만원 (감 27,500백만원)

○ 2022년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세부사업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 (증감률)
합 계	383,743	383,743	-
중소기업 금융지원	310,901	338,401	27,500(8.8%)
중소기업직접융자	200,000	200,000	-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108,776	136,276	27,500
자금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	216	216	-
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	607	607	-
기금업무대행수수료	1,302	1,302	-
재무활동	72,837	45,337	△27,500(△37.8%)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예수금 원리금 상환	2,750	2,750	-
예치금	70,087	42,587	△27,500
행정운영경비	5	5	-
기금관리비	5	5	-

### 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의 변동없이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의 세부사업중 **예치금**을 △275억원 감액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중소기업금융지원**의 세부사업중 **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**에 275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당초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증·감 조정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
  - ①정책사업인 **중소기업 금융지원**은 당초 계획(3,109억 100만원)보다 8.8%, 275억원 증액하여 의회의 의결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나,

- ②재무활동은 당초 계획(700억 8,700만원)보다 △37.8%, △275억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정책사업을 **정책사업, 재무활동, 행정운영경비**로 정하고 있어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예치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지출계획 변경현황

(단위 : 백만원,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( B )	증 감 ( C = B - A )	증 감 륜 ( D = C / A )
계	383,743	383,743	0	-
<b>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</b>	310,901	338,401	27,500	8.8
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(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)	310,901	338,401	27,500	8.8
중 소 기 업 직 접 용 자	200,000	200,000	0	-
시 증 은 행 협 력 자 금 지 원 이 차 보 전 금	108,776	136,276	27,500	8.8
자 금 통 합 관 리 시 스템 유 지 보 수	216	216	0	-
서 울 형 마 이 크 로 크 레 디 트 지 원	607	607	0	-
기 금 업 무 대 행 수 수 료	1,302	1,302	0	-
<b>재 무 활 동</b>	72,837	45,337	△27,500	△37.8
내 부 거 래 지 출 (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)	2,750	2,750	0	-
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(통합계정) 예수금입리금상환	2,750	2,750	0	-
보 전 지 출 (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)	70,087	42,587	△27,500	△37.8
예 치 금	70,087	42,587	△27,500	△37.8
<b>행 정 운 영 경 비</b>	5	5	0	-
행 정 운 영 경 비 (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)	5	5	0	-
기 금 관 리 비	5	5	0	-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안건번호 315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재편집

- 아울러,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  -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#### 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**

#### **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**

#### **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**

##### **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##### **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**

###### **1)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**

###### **○ 제1차 소위원회**

- 일 시 : 2022. 4. 6(수) 10:0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2. 4. 7(목) 10:00 ~ 20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운영

**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**

**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2022. 4.11.)**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1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이 지속 증가하였고, '22년 4무 안심금융 1조원 공급에 따른 무이자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출액 27,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함.

나.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 136,276백만원 반영에 따라, 예치금이 42,587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정책사업(재무활동) 지출계획은 당초 대비 37.8% 변경되었음.

- 이차보전금 : 108,776백만원 → 136,276백만원 (증 27,500백만원)
- 예치금 : 70,087백만원 → 42,587백만원 (감 27,500백만원)

### ○ 2022년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세부사업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 (증감률)
합 계	383,743	383,743	-
중소기업 금융지원	310,901	338,401	27,500(8.8%)
중소기업직접융자	200,000	200,000	-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108,776	136,276	27,500
자금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	216	216	-
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	607	607	-
기금업무대행수수료	1,302	1,302	-
재무활동	72,837	45,337	△27,500(△37.8%)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예수금 원리금 상환	2,750	2,750	-
예치금	70,087	42,587	△27,500
행정운영경비	5	5	-
기금관리비	5	5	-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두만 (☎2133-5190)